##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(갑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	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어	ᅦ √표를 합니다					(앞쪽)				
1. 신청인											
① 성명(법인 또는 단체명)			②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						
③ 주소	주소		④ 전화번호								
2. 신청대상 주택 현	<b>념황</b>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									
⑤ 신청대상	⑥ 소재지	① 공시가격	상속주택 현황								
			⑧ 피상속인(사망자)		⑨ 상속개시일	⑩ 소유	① 소재지				
			성명	주민등록번호	(사망일)	지분	구분			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		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비수도권			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		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비수도권			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		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비수도권				
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 상속주택 또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											
세무서장 귀하			신 서	! 청 인:  무대리인:		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					
담당 공무원확인 사항	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										

## 작성 방법

- 1.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2. 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- 3. ③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적습니다.
- 4. ④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- 5. ⑤ "상속주택"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(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)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40%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(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)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.

"무허가주택 부속토지"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「건축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(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)의 부속토지를 말합니다.

- 6. ⑥ 신청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7. ⑦ 신청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.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.
- 8. (8) ~ (11) 신청대상 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9. ⑧ 피상속인(사망자)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10. ⑨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적습니다.
- 11. ⑩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(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① 공시가격란에 적은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)을 적습니다.
- 12. ⑪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)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"[ ] 수도권 "란에 √표를,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"[ ] 비수도권"란에 √표를 합니다.

##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(을)

	⑥ 소재지	① 공시가격	상속주택 현황					
⑤ 신청대상			⑧ 피상속인(사망자)		⑨ 상속개시일	⑩ 소유	① 소재지	
			성명	주민등록번호	(사망일)	지분	구분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비수도권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 비수도권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비수도권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비수도권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 비수도권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 비수도권	
[] 상속주택							[]수도권	
[] 무허가주택 부속토지							[] 비수도권	

※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(갑)의 2. 신청대상 주택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.